

광주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150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윤희, 이미지

변론 종결 2022. 7. 20.

판결 선고 2022. 11. 30.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7. 3. 접수 제122715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7. 8. 접수 제141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 C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B는 2020. 5. 22.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업마니너스자동대출자금 15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124,000,000원, 보증기한 2021. 5.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D에 제출한 후, 주식회사 D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기한 2021. 5. 2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 원고는 2020. 11. 17.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20. 11. 26. 원리금 합계 125,944,19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21. 1.경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1차전50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1. 2. 10.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

○ 피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B가 가족계좌를 이용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된 2020. 4. 9.자 보증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중 810,000,000원을 담보받기 위하여 B에게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피고와 사이에 2020. 7.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 등으로 지칭하고,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10,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B는 이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7. 3. 접수 제122715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7. 8. 접수 제1414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등으로 지칭하고, 위 각 근저당권 전체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B 사이에 사전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B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통지나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의 보증금액을 상환하기로 한 점,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기 불과 1개월 전인 2020. 7. 31. 매출부진 및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C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폐업 직후인 2020. 8. 3.부터 주식회사 D에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던 점, 그 무렵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보증원금 124,000,000원에 대한 사전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대위 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B의 무자력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7. 3. 무렵 B의 적극재산은 합계 311,895,000원, 소극재산은 합계 465,981,00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① 적극재산

1	광주 동구 F	답 2343㎡	126,522,000원	시가감정결과
2	광주 동구 G	답 1365.9㎡	81,954,000원	"
3	해남군 H	답 3369㎡	47,166,000원	"
4	해남군 I	답 3187㎡	47,805,000원	"
5	해남군 J	전 768㎡	8,448,000원	"
합계	311,895,000원			

② 소극재산

1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무	124,000,000원	갑 제2호증
2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13,453,000원	갑 제11호증
3	피고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30,000,000원	"
4	K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43,439,000원	"
5	K의 담보대출채무	130,089,000원	"
6	L 카드의 대출채무	25,000,000원	"
합계	465,981,000원3)		

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B는 가족계좌를 이용하여 사적거래행위를 하였고, 채무자의 이자를 대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M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했으며, 이와 별도로 개선조치(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 이에 피고는 이사장을 다시 선출한 후, 위 M법 제73조에 따라 B의 잘못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고자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고, 그 당시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B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고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호산

별지